

의안번호	2217618
의 퇴 인	이재강의원
회 답 일	2026.9.1.
추계번호	26D1566

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)	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(이하 “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”라 함)를 둔(제1항)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됨(제2항)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사람이 됨(제3항)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-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, 교육·훈련 또는 취업·고용 등 인재 양성·활용 관련 정책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- 그 밖에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사무국을 둔(제5항)	의무규정
2	안 제8조 (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 등)	재외동포청장은 기본계획·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 관리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9조 (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학업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등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10조(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취업·창업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1조 (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정주여건 개선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지원 및 민원행정제도 개선, 전세보증금반환보증, 금융서비스 제공, 체류자격 부여 우대,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,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(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 (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 등)	
3	안 제9조 (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학업 지원)	
4	안 제10조(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취업·창업 지원)	
5	안 제11조 (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정주여건 개선)	

2. 상세 사유

□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(안 제7조)

-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 및 사무국 설치에 따른 인건비, 기본경비, 사업비 지출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□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(안 제8조)

-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재외동포청은 “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·정착 지원” 사업을 통해 2027년 지원 예정인 재외동포청년 장학생 100명과 직업훈련생 5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,100만원으로 예상됨
 - － 실태조사 1인당 단가는 2027년 요구예산 중 “귀환동포 실태조사” 예산 산출근거를

준용하면 74,000원임(귀환동포 실태조사의 경우 10,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7억 3,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)

□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(안 제9조)

- 재외동포청은 2026년부터 “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·정착 지원 사업”을 통해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해 등록금, 생활비,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, 재외동포청 중기 사업계획 중 학업지원 사업 예산 계획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재외동포청 중기 사업계획 중 학업지원 사업 예산 계획: 2026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
신청인원(명)	100	200	300	400
예산(백만원)	2,245	4,715	7,425	10,395

자료: 재외동포청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재 재외동포청의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 사업보다 큰 규모로 학업지원 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□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취업·창업 지원(안 제10조)

-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취업·창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□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정주여건 개선(안 제11조)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지원 및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, 전세보증금반환보증, 금융서비스 제공, 체류자격 부여 우대, 한국문화 교육,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 지원 등을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□ 다만, 제정안이 규정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재외동포의 수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실태조사, 통계 작성, 장학금·학업장려금 지급, 취업·창업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- 2025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, 현재 전세계 재외동포의 수는 700만명이고 이 중 26%인 182만명이 18~39세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청년인구로 추산되나, 이 중 제정안이 규정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해당하는 인원은 합리적

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재외동포청년 인재 1인에 대한 지원 규모는 각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정안에 따른 지원의 1인당 비용을 일률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
- 또한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의 사무국 인력 규모는 안 제7조제6항에서 조직·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는 제정안이 규정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재외동포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